#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795

발의연월일: 2022. 12. 8.

발 의 자:이만희·김용판·박성민

오영환 • 전봉민 • 정우택

조은희 · 최춘식 · 태영호

한무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출국자 및 재외국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감염병,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 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 상황에서 재외국민이 현지 치료비용 부담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인해 국내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로의 이송체계 등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구급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응급환 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및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 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 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 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외국 구급차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 다.
  -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 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이 필요한 경우 및 국외에서 대
	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
	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
	<u>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
	급대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
	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u>있다.</u>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
	제구급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훈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
	제구급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
	여 외국 구급차 운영기관 등 관
	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
	<u> 여야 한다.</u>
	⑤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

제구급대를 재외국민 응급환자 발생국 및 재난발생국에 파견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에게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를 구비하여야 한다.